

공 사 관 리	주관부서	안전공급팀	
등 사 신 니	개정일자	2021.03.01	
이희기 어ㅁ 저키니	개정번호	0	
인허가 업무 절차서	THI OLITI	1/13	

인허가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제・개정일자	작성자	주요 개정내용 및 사유
0	2021.03.01	전명훈	표준문서 간소화에 따른 최초 제정



공 사 관 리	주관부서	안전공급팀	
등 사 전 니	개정일자	2021.03.01	
인허가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0	
언어가 입구 결사지	페 이 지	2/13	

목 차

	<u>항 목</u>	<u>페이지</u>
1.	정의	3
2.	책임과 권한	4
3.	업무절차	4
	3.1 기술검토서 및 공사계획승인(신고)서 작성	4
	3.2 인허가	9
4.	관련문서	12
5	기로과기	12



인허가 업무 절차서

주관부서	안전공급팀
개정일자	2021.03.01
개정번호	0
페 이 지	3/13

1. 정의

1.1 기술검토서

가스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기방식설계서

KGS Code GC 202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에 의거 작성된 배관의 전기 방식에 대한 설계서를 말한다.

1.3 내진성능평가서

KGS Code GC 204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에 의거하여 내진설계를 작성한 것을 말한다.

1.4 도로굴착사업계획

도로굴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굴착(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1.5 도로굴착관련사업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 도로구역(도로예정지, 준용도로 포함)내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1.6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시행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한 도로로 공사가 완료된 날은 도로를 신설, 개축, 확장, 재포장, 덧씌우기 또는 도로굴착공사의 준공일로 본다.

1.7 시공감리

가스공급시설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시공감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공감리 권한을 위탁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명의와 권한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8 주요공정 시공감리

도시가스사업법 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설치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에 대해



공 사 관 리	주관부서	안전공급팀	
등 자 된 니	개정일자	2021.03.01	
인허가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0	
인어가 입구 결사자	페 이 지	4/13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책임과 권한

- 2.1 팀장
 - 1) 공사계획승인(신고)서 승인
 - 2) 기술검토서 승인
 - 3) 시공감리신청서 승인
 - 4) 도로굴착(점용) 사업계획서 승인
 - 5) 도로굴착허가서 승인
- 2.2 팀원
 - 1) 공사계획승인(신고)서 작성 및 신청
 - 2)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신청
 - 3) 시공감리신청서 작성 및 신청
 - 4) 도로굴착(점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 5) 도로굴착허가서 작성 및 신청

3. 업무절차

- 3.1 기술검토서 및 공사계획승인(신고)서 작성
 - 3.1.1 기술검토서 작성
 - 1) 공사계획승인 대상
 - 가) 배관
 - (1)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 하는 공사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사로서 해당 공사 구간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가)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
 -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공사후의 최고사용 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공사
 - 나) 정압기지(정압기), 밸브기지
 - (1) 설치공사
 - (2) 위치변경공사



공 사 관 리	주관부서	안전공급팀	
ㅎ 사 선 디	개정일자	2021.03.01	
인허가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0	
원여가 압구 결사지	THI OLI TI	5/12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 증설, 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2) 공사계획신고 대상

가) 배관

- (1)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 호칭지름 50mm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 (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해당 공사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나) 정압기지(정압기)

- (1) 방산탑(벤트스텍)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 (2)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 증설, 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 3) 사용자 토지 내 가스차단장치 설치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가스공급시설에 속하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시

- 가) 기술검토 대상시설
 - (1) 기술검토서류에 사용자 토지 내 가스차단장치 설치를 위한 "사용자 동의서" 첨부(마케팅솔루션팀 협조)
 - (2) 기술검토 시공내역서의 비고 란에 "사용자 부지 내 설치"로 표기
- 나) 기술검토 비대상시설

시공감리시 "사용자 동의서" 제출

4) 기술검토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산출하여 정해지는 수수료에 의한다.

5) 구비서류

배 관	정 압 기
1. 기술검토신청서	1. 기술검토신청서
2.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의 설치계획서
3.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설명서	3.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설명서
4. 전기방식설계서	4. 정압기 사양
5. 내진성능평가서	5. 정압기 위치도



인허가 업무 절차서

주관부서	안전공급팀
개정일자	2021.03.01
개정번호	0
페 이 지	6/13

- 6. 설계도면
- 7. 대지사용승낙서(해당시)
- 8. 공사공정표
- 9. 교량첨가배관 안전성검토서 및 평가서
- 6. 설계도면
- 7. 건물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시)
- 8. 공사공정표
- ※해당 서식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서식(기술검토신청서) 및 "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 6) 기술검토서 처리기한 : 5일 이내
- 7) 기술검토서 보존기한 : 영구 보존
- 8) 기술검토서 첨부 서류인 내진성능평가표 및 전기방식설계서는 「일위대가 작성 및 공사설계 업무절차서」를 참고한다.
- 3.1.2 공사계획승인(신고)서 작성
 - 1)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대상3.1.1항 기술검토 대상 참조
 - 2) 구비서류
 - 가) 공사계획서
 - 나) 공사공정표
 - 다) 변경사유서(변경 시)
 - 라)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본)
 - 마) 시공협력회사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 바) 시공관리자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사본
 - 사) 공사예정금액 명세서(계약서) 사본
 - 3) 신청서 접수

해당 시/군청 담당 부서

- 4) 처리기한 : 승인서 3일, 신고서 즉시(단, 공사계획 승인(신고) 기간 연장 시연장 기한이 명시된 공문 작성하여 신청기한 5일 전 연장신청 할 것)
- 3.1.3 시공감리
 - 1) 공사계획서 제출

시공감리대상,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계획서 및 월별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간계획서는 매년 2월 말까지, 월별계획서는 향후 3개월간(당월 포함 3개월 분)의 계획서를 매월 말 10일 전까지 각각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다.

- 가) 공사의 종류
- 나) 공사장소 또는 구간
- 다) 공사개요



공 사 관 리	주관부서	안전공급팀	
등 사 된 니	개정일자	2021.03.01	
	개정번호	0	
1여가 입구 설치지 -	페 이 지	7/13	

ŅΙ

라) 착공 및 준공예정일

- 2) 시공감리 신청
 - 가) 시공감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계획의 승인 공문 또는 공사 계획의 신고 수리공문(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에 한함) 및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시공감리 희망일 3일 전까지 공사에 시공감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나) 긴급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 희망일 당일에 시공감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사계획의 승인 공문 또는 공사 계획의 신고 수리공문을 FAX로 제출 후 공사에 유선통지 한다.
 - 다) 시공감리 신청시 밸브길이는 배관길이에 합산하여 신청토록 한다.
 - 라) 공사계획승인(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자배관 시공감리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1) 위치도 및 설계도면(배관길이, 관경, 최고사용압력이 명기된 것)
 - (2) 내진설계서
- 3) 시공 도중 변경사항 처리
 - 가) 시공감리 진행 중 공사계획의 승인(신고) 또는 기술검토를 받은 구간 안에서 공사계획의 변경승인(신고) 또는 변경기술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그 변경내역을 설계도면(감리원) 및 준공도면에 표시한 후 감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시공감리 진행 중 당해 시공구간 안에서 변경승인(신고) 또는 변경기술 검토대상이 되는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먼저 시공감리를 진행 후 변경 사항을 종합하여 최종감리 전까지 변경 절차(사업자배관은 기술검토 및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사용자공급관은 변경 기술검토를 받는 것을 말함)를 거치도록 해당 서식으로 현장에서 통지(최초 발생시점에 사업 자배관에 한해 1회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당초 공사계획의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로 판단하여 시공감리를 신청한 시설의 시공감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배관의 길이 증가로 공사 계획의 승인대상(20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 후 처리한다.(현행 법상 전체공사 종료 후 승인·신고 신청 불가)
- 4) 시공감리증명서 요청
 - 가) 시공감리증명서는 최종감리 및 관련서류의 징구가 끝나고 소정의 절차 후 시공감리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 5) 시공감리증명서 현장발급 조건
- 가) 배관의 이설·교체공사 후 즉시 가스가 통입 되어야 하는 시설



공 사 관 리	공	사	관	리			
---------	---	---	---	---	--	--	--

주관부서	안전공급팀
개정일자	2021.03.01
개정번호	0
페 이 지	8/13

- 인허가 업무 절차서
- 나) 최종감리일에 가스가 통하고 있는 기존배관과 신설배관을 연결하여 가스가 통입되어야 하는 시설
- 다) 그 밖에 신속한 가스통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6) 시공감리증명서 현장 발급 절치 및 사후관리
 - 가) 현장발급 절차

현장발급 요청(현장발급 대상 건) → 최종감리 → 현장발급 → 사후처리 (최종 용접부 필름 리뷰, 관련서류 징구, 시공감리수수료 정산 등)

- 나) 정 T 분기점, 기존배관과의 연결부(용접부, 융착부를 말하며, 천공 T 연결부 제외)에 대해서는 가스를 통입시켜 통과하는 가스의 압력으로 누출시험을 실시하며 누출시험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공감리증명서를 수령한다.
- 다) 시공감리증명서 현장발급 없이 누출시험 후 배관에 가스를 통입상태로 둘 수 없다.(누출시험 불합격시에는 즉시 가스를 퍼지 후 시정)
- 라) 휴일감리를 위한 현장증명서의 사전발급으로 증명서의 발급일자와 실제 감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발급일자를 실제 감리일자로 정정(검사원 수정인)된 증명서를 수령한다.
- 7) 분할 시공감시 실시
 - 가) 부득이하게 배관에 대하여 분할 시공감리가 필요할 경우 공사계획승인 (신고)시설에 대하여 분할해서 시공감리를 요청하고 기 납부 수수료에서 차액을 환불 후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감리를 신청토록 한 후 분할 처리한다.
 - 나) 분할시공감리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팀에 분할 시공감리 현황을 통보하고,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번호를 부여하여 재시공한다.
- 8) 임시사용 시설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
 - 가) 행정 절차
 - (1) 임시사용 구간 시공감리 요청(공문, 신청인)
 - (2) 임시사용 구간 시공감리 실시(공사)
 - (3) 임시사용 구간 시공감리 결과 통보 (공문 및 준공도면 첨부, 공사→신청인)
 - (4) 임시사용 신청(신청인→행정관청)
 - (5) 임시사용 승인(행정관청)
 - 나) 일시적인 임시사용 승인 절차
 - (1) 일괄 임시사용 신청(신청인→행정관청)
 - (2) 일괄 임시사용 승인(행정관청)
 - (3) 단계적 시공 후 임시사용



공 사 관 리	주관부서	안전공급팀
등 사 건 디	개정일자	2021.03.01
허가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0
어가 입구 결사지	페 OI XI	0/12

(4) 전체 시설 준공 후 최종시공감리 처리

ŅΙ

3.2 인허가

- 3.2.1 일반사항
 - 1) 주요 지하매설물(도로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 3.2.2 도로굴착(점용) 심의
 - 1) 도로굴착(점용) 심의 기간
 - 가) 관련법규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나) 심의기간 : 1월 · 4월 · 7월 · 10월 중
 - 다) 특기사항 : 심의기관 별로 심의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 2) 도로굴착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가) 관련조항 : 도로법 시행령
 - 나) 도로굴착심의 기관

도로의 종류	도로관리기관(심의기관)	비고
국 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방도	해당시청	
시 도	해당시청	
군도/기타 도로	해당군청	

※ 사전 협의기관

- 지방도: 관할 충청남도종합건설사무소
- 국 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관할 국토관리사무소) 단,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에 해당 감리단이 있는 경우 감리단
- 3) 도로굴착(점용) 관련 심의/조정
- 가) 공개조정심의회 : 공개석상에서 점용방법, 점용기간, 이중굴착방지, 도로법 규제사항 등 의견반영
- 나) 서면조정심의회 : 서면으로 각 기관의 심의회 심의의원의 의견을 반영
- 다) 조정결과 통보 : 사업시행자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 (관할 조정심의 기관)
 - 4) 첨부서류

가) 도로

<u> </u>				
구분	심의/허가	착공계	도로공사신고서	
첨부서류 (공통)	공통사항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포장별 복구계획서 -표준굴착단면도	-착공계 -굴착/복구계획서 -위치도 - <u>현장대리인(아산)</u>	-도로공사신고서 -점용허가증 사본 -공사구간 -교통처리계획도 -공사계획위치도	



주관부서 안전공급팀 개정일자 2021.03.01 개정번호 0 페이지 10/13

인허가 업무 절차서

	-도로점용 면적조서		준공계
	-도시가스배관 공사방법 -비산먼지 -안전관리계획서 -교통처리계획서 -교통처리계획도 -사후관리 -설계도면 -사진대지		-도로점용공사 완료 확인 신청서 -도로굴착(점용) 내역서 -준공도면 -사진대지
	허가서류(심의자료 포함) -심의 결과 사본 -지하매설물 협의 공문 *교량첨가배관허가(추가사항) -매달기 표준단면도 -교량첨가배관안전성검토서 및 평가서		(국토관리청:공정별 사진)
구분	심의/허가	착공계	도로공사신고서
국토관리청	첨부서류(공통사항 포함) -지하매설물 관리자 협의공문 -토지지번별조서 -압입횡단도 및 안전관리 계획서 ※국도 경우 사전협의 실시 허가서류(심의자료 포함)	-공사착수신고서	

나)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첨부서류	허기	공사착수신고		
검구시규	하천	농업기반공사	등사작구선고	
신청서	-지방하천 : 하천점용허가 -소하천 : 소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 : 공유수면점용허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신청서	-공사착수신고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점용료 납부 영수증 -공유수면 점용허가 실시계획인가 공문 사본	
	II 어제하다		준공인가신청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현장위치도 -복구계획서 -공사비설계서 (공사원가계산서) -사진대지 -지적도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승인서 -사업계획서 -사진대지 -복구계획서 -현장위치도 -지적도	신청서 -공사완료보고서 -사진대지	



인허가 업무 절차서

주관부서	안전공급팀
개정일자	2021.03.01
개정번호	0
TH OLXI	11/13

-토지대장, 등기	기부등본 -토지대	장	
-현황실측도	-도시계	획이용확인원	
-구적도	-부근 제	[]적도	
-복구계획 평면	-현황실	측도	
-종단면도	-종단면	도	
	-복구계	획도	

다) 철도(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허가신청서	착공계	준공계
첨부서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사업계획서 -사업위치도 -사진대지 -안전관리계획/공사방법 -사후관리계획서 -승낙서 -사업자등록증 -지적도 -토지대장 -도시계획이용확인서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도면(종평면도, 횡단면도)	-착공계 -사업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증(사본) -궤도보수인력 선임 -예상공정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및 궤도보수 관리 용역계약 사전요청(변화지원팀)	-철도횡단 지하매설물 관리대장 -사진대지 -도면
협의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3.2.3 교량첨가배관 안전성검토 및 평가

- 1) 교량첨가배관 안전성 검토(외주발주)
 - 가) 안전성평가 검토 목적
 - (1) 도시가스배관 설치시 필요한 교량 매달기 공사가 교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의 여용력 파악 및 매달기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검토하여 교량의 안전성 확인
 - 나) 검토범위 및 방법
 - (1) 검토범위(주변현황 조사, 기존/문헌자료 검토, 교량안전성 검토)
 - (2) 검토방법
 -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의 여용력 및 구조해석에 적용된 하중 종류 파악 및 매달기부에 대한 구조해석(SAP2000) 실시
 - 다) 공사현황(매달기 관의 종류 및 관경)
 - 라) 매달기 공법 종류(매달기 길이 및 개소)
 - 마) 교량 위치 및 현황(위치도, 교량 종단면도, 주형 일반도)
 - 바) 매달기 위치 선정(교량의 내/외부)



공 사 관 리	주관부서	안전공급팀
등 사 된 니	개정일자	2021.03.01
인허가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0
언어가 답구 결사지	TH OLT	12/13

- 사) 매달기부 구조검토
- 아) 기존교량 안전성 검토(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 (1) 하중조건
 - (2) 바닥판, 주형, 하부구조 검토
- 자) 매달기 구조계산서
- 2) 교량첨가배관 안전성 평가(KGS FS 551 2.5.8.1.3) 기준 적용
 - 가) 정량적 위험성평가 (QRA)
 - 철도, 도로, 지정문화재 등 시설별 수평거리 이내 매설 시
- 3) 계약체결 및 발주(변화지원팀 협조)
- 4) 교량 매달기 공사 시공절차
 - 가) 공사요청/접수
 - 나) 교량첨가배관 안전성 검토(안전성 검토서,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매달기 구조계산서)
 - 다) 교량첨가배관 안전성 평가(안전성 검토 결과서, 배관응력해석 결과)
 - 라) 기술검토서 제출 및 시공감리 수검(안정성평가서 첨부)
 - 마) 도로굴착허가서 제출(안정성평가서 첨부)

4. 관련문서

4.1 도시가스사업법 및 KSG Code

5. 기록관리

No	기록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책임자
1	기술검토서	법정서식	영구	안전공급팀장, 안전서비스팀장
2	공사계획승인(신고)서	"	"	"
3	인허가 서류	٠.	44	"

【끝】